

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6. 7. 2.>

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(제6조제6항 관련)

교육분야		교육과목	교육시간		
			계	이론	실습
1. 1급 치유농업사양성과정	가.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	1)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·신체 건강 및 재활	14	8	6
		2) 치유농업서비스 대상자의 중점관리	14	8	6
	나.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	1) 치유농업자원의 관리	10	6	4
		2)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	10	6	4
	다.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	1)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의 기획·관리	16	8	8
		2) 치유농업서비스 종사인력의 역량강화	16	8	8
	라.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	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심화	44	16	28
	소계		124	60	64
2. 2급 치유농업사양성과정	가.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	1) 치유농업개론	8	8	
		2) 치유농업서비스의 대상자 진단	18	18	
	나.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	1) 치유농업자원의 관리	24	12	12
		2)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	18	10	8
	다.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	1)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·개발	24	12	12
		2)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	16	8	8
		3)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	16	8	8
	라. 선택과목	1) 농업분야 원예학, 재배학, 작물생리학, 작물보호학, 토양학, 축산학개론, 동물생리학, 동물영양학, 동물질병학, 동물관리학, 곤충학, 농기계학, 농작업(農作業)안전관리, 반려동물학	18	18	
		2) 비농업분야 보건학개론, 보완대체의학, 예방의학, 교육학개론, 교수설계론, 심리학개론, 사회복지학, 직업 및 진로상담			
	소계		142	94	48